

대전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1047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10477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102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C

변론종결 2022. 5. 3.

판결 선고 2022. 5.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102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4. 접수 제3279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4. 접수 제32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 "611,458,066원"을 "772,371,620원"으로 수정한다.
- 제4면 제3행 아랫줄에 아래 각 채무를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 V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 57,913,554원
- W에 대한 채무 : 50,000,000원
- X에 대한 채무 : 53,000,000원
- 제4면 제4행 "갑 제1, 2, 5, 9, 10, 11호증"을 "갑 제1, 2, 5, 9 내지 11, 19, 20, 22호증"으로 수정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양수한 E에 대한 채권은 2015. 3. 30.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10. 15. 위 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E의 총 적극 재산은 889,961,120원이고 그중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당시 가액은 147,961,120원(= 24,700,000원 + 13,749,120원 + 109,512,000원)이며 소극 재산은 772,371,620원이었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742,000,000원(= 889,961,120원 - 147,961,120원)이 됨에 따라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E의 관계, 증여경위, E의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E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4. 접수 제3279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4. 접수 제32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영화

판사신순영

판사윤이진

별지